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6
----------	-----

제출연월일 : 2004년 9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2,484명 ⇒ 2,494명 (증1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83명 ⇒ 1,393명 (증10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변동없음
 -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484명”을 “2,494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383명”을 “1,393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부칙(조례 제2812호) 제2조중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를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12.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 구조 문 대 비 표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2484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383명</u></p> <p>2~4. (생략)</p>	<p>제2조 (정원의 총수) <u>2,494명</u></p> <p>1. : <u>1,393명</u></p> <p>2~4. (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7조 (자치행정국) (생략) <u><신설></u></p> <p>부칙(2004. 8. 2 조례 제2812호)</p> <p>제2조(한시기구)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의 존속기한은 <u>2007년 6월 30일</u>까지로 한다.</p>	<p>제7조 (자치행정국) (현행과 같음)</p> <p><u>12.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u></p> <p>부칙(2004. 8. 2 조례 제2812호)</p> <p>제2조(한시기구)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의 존속기한은 <u>2007년 6월 30일</u>까지로 하고,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은 <u>2005년 12월 31일까지로</u> 한다.</p>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 ④ (생략)